
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56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3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(재)안산인재육성재단의 독립성 확보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, 정관의 기재사항이 부합되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
- 법령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쉽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

주요내용

- ‘임원’에 관한 사항 변경 (안 제4조, 제6조)
 - 정관과 부합하도록 임원관련 사항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(안 제1조, 제4조제1항제4호, 제4조제1항제9호, 제4조제2항, 제6조제3항, 제6조제4항, 제6조 제5항, 제9조, 제11조제1항, 제16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2. 4. ~ 2. 15.(11일간)
- 입법예고 결과보고 : 붙임5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6
- 방침결정문 : 붙임7

< 불임 1 >
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” 을 “지역사회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이사 및 감사,” 를 “임원 및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잔여재산” 을 “남은 재산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” 을 “변경하고자 할” 로, “얻어야” 를 “받아야” 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인정하는 때에” 를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못하는” 을 “못 할” 로, “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 를 “순서로 한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없는 한” 을 “없으면” 으로 한다.

제9조 후단 중 “얻어야” 를 “받아야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얻어야” 를 “받아야” 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잔여재산의 귀속)” 을 “(남은 재산의 귀속)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교육청소년과
임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연 창 희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교육지원팀장 박 향 미
	담당자 성명 · 전화	장 원 영 (행정 3453)

< 불임 2 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<u>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</u>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“재단법인 안산인 재육성재단”을 설립하고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지역사회에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제4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4. <u>이사 및 감사</u>,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~ 8. (생 략) 9. 해산 및 <u>잔여재산의 처리</u>에 관한 사항 10. · 11. (생 략)</p> <p>② 재단이 정관을 <u>변경하고자 하는</u>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정관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임원 및</u> 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<u>남은 재산</u> ----- 10. ·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변경하고자 할</u> --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.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이사회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</u>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 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<u>못하는</u>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</p>	<p>제6조(이사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못 할</u> -----</p>

<p><u>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⑤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<u>없는 한</u>,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p> <p>제9조(수익사업)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</p> <p>제11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6조(잔여재산의 귀속) (생 략)</p>	<p><u>순서로 한다.</u></p> <p>⑤ ----- --- <u>없으면</u>, ----- ----- --.</p> <p>제9조(수익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.</p> <p>제11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.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남은 재산의 귀속) (현행과 같음)</p>
--	--